

#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회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563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3월 25일

발 의 자: 운영회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곽향기, 김경훈,  
김길영, 김원중, 김원태,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박성연, 심미경, 유만희,  
이병윤, 이숙자, 이은림,  
이종태, 이효진, 황철규  
의원(18명)

## 1. 제안이유

-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 및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실제 도로와 한강공원 등에서 사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운행 금지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교통문화를 개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안 제5조) 누구든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를 특정 장소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마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누구든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아니한 픽시 자전거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
3.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강공원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5. 그 밖에 시장이 보행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5조(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p>
<p>&lt;신 설&gt;</p>	<p>누구든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아니한 픽시 자전거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p>
<p>&lt;신 설&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li> <li>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li> <li>3.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호에 따른 한강공원</li> <li>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li> <li>5. 그 밖에 시장이 보행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li> </ol>
<p><u>제5조</u> ~ <u>제10조</u> (생 략)</p>	<p><u>제6조</u> ~ <u>제11조</u> (현행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p>

#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픽시 자전거가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안 제5조(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의 신설을 통해 픽시 자전거 이용자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자전거 운행을 금지하는 규제적 성격의 조문으로,
- 이는 조례 개정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김 경 명

☎ 02-2180-7954

e-mail : kimkmi0809@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